

서울고등법원

제2민사부

결정

사 건 2006카기252 기피
신 청 인 김명호

주 문

이 사건 기피신청을 각하한다.

이 유

살피건대,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 사건은 2006. 3. 3.자로 당 재판부에 재배당되어 기피당한 법관이 위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, 이 사건 기피 신청은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06. 3. 7.

재판장 판 사 박 흥 우
판 사 이 현 숙
판 사 이 우 철

2006. 3. 7. 10:09
서울고등법원
법원주사 안